

2016년 청년인턴 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성북구」 라 한다)와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 (이하 「성북구상공회」 라 한다)의 2016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 적)

본 협약은 성북구와 「2016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성북구상공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의 범위)

성북구상공회는 「2016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공고 및 접수, 선발, 관리(교육)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로 한다.

제 3 조(협약 기간)

1. 협약기간은 2016. 4. 15 ~ 10. 31까지로 한다.
2.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성북구에 연장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제 4 조(신의 성실)

성북구와 성북구상공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준수한다.

제 5 조(비 용)

이 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임금(1인/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은 성북구가 부담한다. 다만, 중식비, 4대가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채용업체에서 부담한다.

제 6 조(집 행)

사업비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기타 관련법에 의거 집행하도록 한다.

제 7 조(근무 시간)

인턴 약정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한다.(당해 기업의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 조건은 근로 기준법과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 8 조(모집 및 선발)

「2016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 모집 및 선발기준」에 적합하도록 선발한다.

참여기업과 청년인턴 모집 및 선발은 성북구상공회에서 한다. 다만 아래사항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참여 기업

1.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3.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4.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5.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7. 청년인턴제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이상 중도퇴사자 발생기업(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가능)
8.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청년 인턴

1.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2.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대학 재학생(통신, 사이버, 야간대학교 재학생은 예외)
4.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제 9 조(참여기업 및 인턴 관리)

성북구상공회는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지원기간 중 청년인턴을 정리하고 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참여기업이 인턴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청년 인턴에게 기타 불이익 사항을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보고 및 정산)

성북구상공회는 아래사항을 성북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년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2. 사업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결과를 제출한다.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책임과 의무)

성북구상공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2016년 청년인턴 지원 사업 지침 및 협약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한다.
2.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 기타 모든 사항은 성북구상공회에서 책임을 진다.

제 12 조(지도·감독)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상공회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성북구상공회는 지적사항이 발생될 경우 성북구의 조치(시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성북구와 성북구상공회가 합의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북구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14 조(효력 발생)

- ① 본 협약은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성북구와 성북구상공회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4.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성 북 구 청 장 김 영 배 (인)

수 탁 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 (101호) (장위동)

서울상공회의소 성북구상공회장 이 주 영 (인)